

제241회 영등포구의회
2022년도 제2차 정례회

『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』

- 문화체육과 -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2. 11. 25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『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73호로 2022년 11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범 위

- 영등포문화재단 운영, 구민회관 및 문화예술시설 운영·관리, 문화행사 추진

○ 출연금액: 4,150,000천원

- 재단본부 인력 운영 및 구민회관 운영관리: 2,984,494천원
-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 기획 및 시민예술 활성화 추진: 842,378천원
- 문화예술 정책 추진 및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운영: 323,128천원

※2023 회계연도 세입·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, 제13조(운영재원 등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시설의 관리·운영)

5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,
 -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면,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, 구민회관 운영 등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지역 문화예술자원 발굴과 진흥, 구민 복리 증진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검토 결과
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

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.

- 따라서, 위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①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~③(생략)

3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재원 등)

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구청장은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